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0. 9. 3.

발 의 자 : 오진아 외 2인

## 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저소득층 초·중등학생들에게 국한하여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서울시 마포구 초등학교 및 중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「헌법」 제31조에 규정된 의무 교육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, 관내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투자를 강화하기 위하여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 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수는 5인 이내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- 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「헌법」 제31조에 규정된 무상교육의 범위는 무상급식을 포함하는바,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음.
- 따라서 현행 저소득층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에게만 지원되는 무상급식은 헌법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, 차별적 복지정책으로 보편적 복지정책 이념에도 상반됨.

- 또한 마포구 내 학교에 대한 자치구의 지원정책을 점검하고, 새로운 정책을 강구함으로써 타구와 마포구, 마포구 내의 학교 간 교육격차의 완화 및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의 현법정신을 실현하는 한편, 관내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들의 활력이 넘치는 학교생활을 도모하고자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 특별위원회”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3. 관련법규

- 「헌법」 제31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- 「헌법」 제31조제3항은 “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는 바, 평등하고 차별 없는 교육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. 특히 학교급식 또한 의무교육의 범위에 속하여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.
-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, 서울시의회는 물론 타 지방의회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마포구의회도 달라진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.
- 그리고 혁신학교 추진,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도전이 시도되고 있음을 주목하며, 마포구 역시 교육 선진구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지원의 정책상을 마련할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.
- 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입법정신을 실현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한편,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을 위하여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 특별위원회”의 구성을 결의한다.

2010. . 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